

장 학 규 정

(개정 2019. 09. 30., 법인인가일 2019. 09. 25.)
(개정 2018. 08. 21., 법인인가일 2018. 08. 17.)
(개정 2017. 07. 25., 법인인가일 2017. 07. 21.)
(개정 2016. 06. 13., 법인인가일 2016. 06. 10.)
(개정 2012. 10. 30)
(개정 2011. 08. 25)
(개정 2010. 01. 12)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서라벌대학교 학칙 제13장(장학금)에 의거 학생들의 면학을 권장하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필요한 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12.10.30〉

제 2 조(적용범위)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은 국가기관 또는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 2 장 장 학 금

제 3 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하고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교내장학금 (별표 1호)
 - 가. 원석장학금 〈삭제 2018.08.21〉
 - 나. 총장장학금 〈개정 2010.1.12〉
 - 다. 특기장학금
 - 라. 특별장학금
 - 마. 교직원자녀 장학금 〈개정 2011.08.25〉
 - 바. 봉사장학금
 - 사. 보훈장학금
 - 아. 근로장학금
 - 자. 가족장학금

차. 복지장학금

카. 해외연수장학금 <신설 2016.06.13.>

2. 신입생장학금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1.12>

3. 교외장학금은 개인이나 각 장학단체에서 지급되는 바에 따른다.

제 4 조(장학금 재원) 장학금 재원은 본 대학 등록금 징수액의 일정비율과 교외장학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제 5 조(장학금 결정) ①관련부서는 전조의 등록금 징수액의 일정비율을 매 학년도 말에 책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2>

②장학종류별, 학과별 지급액은 매 학기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0.1.12>

제 3 장 장학위원회

제 6 조(설치) ①장학종류별 지급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12>

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0.1.12>

제 7 조(구성) <삭제 2010.1.12>

제 8 조(기능) <삭제 2010.1.12>

제 9 조(회의) <삭제 2010.1.12>

제 4 장 장학생의 선정

제10조(교내장학생의 선정) ①장학생으로 선정 받을 수 있는 자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거나 또는 가계가 곤란한 자 중에서 별표 1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②위 제1항에 해당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학과장은 수혜대상자를 선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개정 2010.1.12>

제10조의2(장학사정관제) ①장학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학사정관 제도를 도입, 활용 할 수 있다.<신설 2012.10.30>

②총장은 교원 또는 직원을 장학사정관으로 임명 할 수 있다.<신설 2012.10.30>

③장학사정관은 학생개별 상담을 통해 가정형편, 성적 등을 고려하여 학생 맞춤형 장학 정보를 제공하고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장학사정관 장학생으로 추천한다.<신설 2012.10.30>

④ 장학사정관은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자의 장학금 신청서, 추천서 및 상담 기록부를 첨부하여 수혜대상자를 선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장학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신설 2012.10.30〉

제11조(교외장학생의 선정) 교외장학생의 선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을 의뢰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 ② 해당 학과 및 인원을 지정하여 추천을 의뢰하였을 때에는 학과장의 복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정한다.〈개정 2010.1.12〉
- ③ 해당 학과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장학생 선발공고를 통해 신청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0.1.12〉

제12조(배정시기 및 선정시기) 장학생 배정 및 선정시기는 매 학기 성적 확정 후 해당부서로부터 성적일람표를 교부받아 배정 및 선정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0.1.12〉

제 5 장 장학금의 신청 및 선발

제13조(장학금 신청) ① 보훈장학금 최초 신청자는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또는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증명서를 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12〉

② 근로장학금을 받고자하는 학생은 매 학기초 소정기일내 장학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1.12〉

③ 교직원자녀 장학금 최초 신청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를 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12, 2011.08.25〉

④ 가족장학금을 받고자하는 학생은 소정기일내 장학금신청서와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해당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가족의 범위는 부부, 친자, 형제자매로 한다.〈개정 2010.1.12〉

⑤ 복지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말 소정기일내 장학금신청서와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해당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1.12.〉 〈삭제 2016.06.13.〉

제14조(추천 의뢰) 해당부서는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매 학기마다 각 학과별로 장학금의 종류 및 학과별 지급액을 각 학과장 및 추천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추천을 의뢰한다.〈개정 2010.1.12〉

제15조(추천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당해 학기에 장학생으로 추천할 수 없다.

1. 〈삭제 2010.1.12〉
2. 〈삭제 2010.1.12〉
3. 〈삭제 2010.1.12〉

4. 징계가 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근로성적이 불량하여 장학금 지급이 중지된 자
6.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제16조(추천 기준) 각 학과장 및 추천 부서장은 제15조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참작하여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0.1.12>

1. 수혜자격을 갖춘 자
2. 직전 학기에 취득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과목 실적이 없는 자 <개정 2010.1.12., 2019.09.30>
3. 등록횟수가 4회(3년제 : 6회, 4년제 : 8회)를 초과하지 않는 자 <개정 2018.08.21>

제17조(선발 방법) ①학년별 지도교수는 장학금 대상 학생을 가능한 한 직접 면담을 통하여 심사하고 장학추천서를 기재 날인 후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12>

②학과장은 지도교수가 추천한 학생과 해당부서에서 교부받은 성적 일람표를 참고하여 학과 교수회의를 통하여 장학대상자를 심사하고 자격제한, 성적, 이중수혜여부, 학년별 인원 배정의 균형유지 등을 검토, 조정한 후 해당부서에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0.1.12>

③해당부서는 각 학과장 및 추천 부서장으로부터 추천된 수혜대상자에 대하여 배정인원, 이중수혜 여부 및 자격제한 등을 검토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개정 2010.1.12>

④대상자중 교체가 되었을 경우에는 수혜자격 기간이 많은 자를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동점자 처리) 평균평점이 동점일 때의 선발우선 순위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1. 실점이 높은 자
2. 신청 학점수가 많은 자
3. 전체 학기 취득성적이 우수한 자
4. 수혜자격 기간이 많은 자

제19조(장학생 교체) 해당부서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교체할 수 있다.<개정 2010.1.12>

1. 휴학, 제적, 자퇴하였을 경우
2.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3. 교외장학생으로 선발되었을 경우
4. 본인이 수혜를 포기하였을 경우
5. <삭제 2010.1.12>
6. 기타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제 6 장 장학금의 지급

제20조(장학증서 발급)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장학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0.1.12>

제21조(지급방법) ①장학금 지급은 확정된 장학금 지급대상자에게 매 학기 등록 시 납입금에서 감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계좌로 송금할 수 있다.<개정 2010.1.12>

②교외장학단체에서 기증한 장학금이 학교를 통하여 전달될 때에는 해당부서에 입금시킨 후 지급토록 한다.<개정 2010.1.12>

제22조(수혜기간)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당해 학기를 원칙으로 하고 4학기(3년제 :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편입학한자 및 재입학자는 정상적인 잔여 이수학기 이내로 한다.

제23조(이중지급 금지) ①모든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근로장학금, 특별장학금, 생활비 명목의 교내·외 장학금<개정 2018.08.21>
2. 외부장학재단의 중복지급 제한규정이 없는 경우 교내장학금의 일부를 수혜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등록금 범위 내에서의 외부 장학금
3.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이중지급을 할 수 있다.<개정 2010.1.12>

②이중수혜 대상자는 본인이 그중 유리한 종류를 택일할 수 있다.

제24조(장학금 수혜보고) 총장의 추천에 의해서나 또는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그 사실을 지도교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지도교수는 학과장을 경유하여 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12>

제25조(지급중지 및 반납) ①해당부서는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0.1.12>

1. 휴학, 제적, 자퇴한 자
2. 징계 처분을 받은 자
3. 근로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4. 본인이 수혜를 포기한 자
5. 기타 사유로 지급 중지가 필요한 자

②해당부서는 봉사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봉사활동을 중지할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반납 받을 수 있다.<개정 2010.1.12>

제26조(지도) 지도교수는 장학생으로 하여금 수혜자로서 본분을 다하고 학업에 정진하여 타의 모범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27조(기록) 해당부서는 장학생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장학금 지급 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1.12>

제28조(세부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심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0.1.12>

부 칙

- 이 규정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199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1998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1998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1999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0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01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제3조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중 별표1)의 '7. 교직원장학' 과 '8. 직계자녀장학'은 2002학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0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전 입학생의 경우 입학당시 선정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0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0.1.12, 2011.08.25, 2012.10.30, 2016.06.13.>

교내장학금 선정대상 및 지급기준

장학금종류	선 정 대 상	지급기준(별표 2)	추 천 자
원석장학금	<삭제 2010.1.12>		
총장장학금	1. 학업성적(직전학기 3.0이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거나 가계가 곤란한 자 중에서 선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학과장
특기장학금	1. 학교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 2. 체육, 기타 기능의 능력에 따라 학교의 명예를 빛낸자	일정액	해당부서장 학과장
특별장학금	1. 기타 총장이 특별히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일정액	해당부서장 학과장
교직원자녀 장학금	1. 우리대학 교직원의 직계자녀로서 직전학기 평균 평점 3.0(B ⁰)이상인 자 ※교직원: 전임교원 이상(강의전담포함), 정규직 직원	2급	학과장
	2. 우리대학 교직원의 직계자녀로서 직전학기 평균 평점 3.0(B ⁰)미만인 자 ※교직원: 전임교원 이상(강의전담포함), 정규직 직원	3급	
봉사장학금	1. 학생자치 활동에 봉사한 자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신청과목 전부의 학점(16학점이상)을 취득하고 평균평점이 3.0(B ⁰)이상인 자 - 학과 학회장 - 학과대표	일정액	해당부서장 학과장
보훈장학금	1.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자녀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70점이상인 자	본인: 등록금전액 자녀: 등록금 반액, 국고반액보조	해당부서장
근로장학금	1. 대학 언론사 임원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신청과목 전부의 학점(16학점이상)을 취득하고 평균평점이 3.0(B ⁰)이상인 자	일정액	해당부서장 지도교수
	2. 직전학기 성적이 신청과목 전부의 학점(16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근로희망자	일정액	해당부서장 학과장
가족장학금	1. 3인이 당해 학기 등록하여 재학하는 경우 장학금액이 많은 2인에 한해 지급	7급	해당부서장
	2. 2인이 당해 학기 등록하여 재학하는 경우 장학금액이 많은 1인에게 지급	7급	해당부서장
복지장학금	1. 기초생활수급자 중 국가장학제도 지원대상 성적을 충족하는 자 2. 기초생활수급자 중 국가장학제도 지원대상 성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3. 그 외 가계가 곤란한 자	일정액	해당부서장 학과장
장학사정관 장학금	1. 장학사정관의 추천을 받은 자	일정액	장학사정관
해외연수 장학금	1. 해외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참가하거나 해외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		

[별표 2]

장학금 지급기준

장학금 지급기준	지 급 액(1인당)	비 고
1급	등록금 전액	입학금 제외
2급	등록금액의 70%	입학금 제외
3급	등록금액의 50%	입학금 제외
4급	등록금액의 35%	입학금 제외
5급	등록금액의 30%	입학금 제외
6급	등록금액의 20%	입학금 제외
7급	등록금액의 10%	입학금 제외

[별표 3]〈개정 2010.1.12., 2012.10.30., 2017. 07. 25.〉

장 학 추 천 서					
인 적 사 항	학 부(과)	학 번	학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핸드폰 :
장 학 추 천 내 용 및 사 유	장 학 명 : 특별장학생 장학금액 : 일금 원(₩) 추천사유 :				
성 적	이수학기	평 점	위 / 명중	확 인 (인)	
학년 학기	/ 4.50	/			
위와 같이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지도교수 성명 : (인) 학 과 장 성명 : (인)					
서라벌대학교 총장 귀하					

[별표 3-1호] 〈삭제 2010.1.12〉

[별표 3-2호] 〈삭제 2010.1.12〉

[별표 3-3호] 〈삭제 2010.1.12〉

[별표 3-4호] 〈삭제 2010.1.12〉

[별표 4] 〈삭제 2010.1.12〉

[별표 5] 〈삭제 2010.1.12〉

[별표 6] 〈삭제 2010.1.12〉

[별표 7] <개정 2010.1.12, 2012.10.30>

서라벌 제 호

장 학 증 서

과

성 명 :

위의 학생은 20 학년도 제 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므로

이에 장학증서를 수여합니다.

장학금액 :

20 년 월 일

서라벌대학교

총 장
000박사

0 0 0

[별표 3] <신설 2016.06.13.>

2016학년도 신입생 장학혜택

장학명	지급대상	장학금액	비고
내신우수 장학	내신 1등급(인문계)	1학기 등록금 전액 감면	▶2016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내신 1등급(비인문계)	입학금 100% 감면	
	내신 2등급(인문계)	수업료 100만원 감면	
	내신 3등급(인문계)	수업료 80만원 감면	
	내신 4등급(인문계) (대상학과는별도지정)	수업료 60만원 감면	
수능우수 장학	고등학교졸업예정자중 수능영역별백분위 (80%~70%)이내인자 ->국어,영어,수학영역중학 과별 선택영역적용함	A(80%) : 입학금+매학기 수업료 전액 감면	▶우리대학입학사정시학과별 정원5%이내 선발 가능 (입학 후 장학금 지급) ▶단, 재학 중 평균평점3.5이상 ▶2016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B(75%) : 입학금+매학기 100만원 감면	
		C(70%) : 입학금+매학기 50만원 감면	
멘토추천 장학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품행이 방정하 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써 고교담임, 학과교수 추천을 받은 학생	입학금+수업료 80만원 감면	▶고교담임, 학과교수로부터추천을 받은학생으로 학과별 입학정원 의 10%이내 선발 (단, 간호,치위생,방사선과는 입학정원의 5%이내) ▶만학도 경우 고교담임 추천 대신 학과장포함 교원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학생(학과교수2인이상추천) ▶가계곤란자확인서류 (예:건강보험료납입영수증)
만학도 장학	만28세이상입학자 (2016.03.01기준)	입학금 50% 감면	▶1988.03.01이전출생자
학업장려 장학	2016년도 신입생 중 국가장학금 I유형 수혜대상자 중 선발	일정액 (장학위원회 심의 후 결정)	

복지장학	기초생활 수급자 본인으로 국가장학금 신청자	입학금+매학기 수업료 전액감면	▶국가장학금신청자 ▶재학생 매학기 성적이 80점 이상 일 경우 장학혜택 유지 ▶입학 첫학기에 한해 성적제한 없음
	기초생활 수급자 본인으로 재학 중 성적 80점 미만인 자	매학기 80만원 감면	★정부지원 장학지침 변경 시 변동 적용가능(C경고제 적용) 정부지원 장학혜택 포함
차세대 리더장학	국가공인자격증 중 기능장 취득자	입학금 100% 감면	▶관련 상장 및 자격증 성적표 제출
	전국체전 또는 대통령배대회, 전국기능 대회(산업인력관리공단) 입상자		
	TOEIC(700),TEPS(600) TOEFL(CBT:200), JPT.NIKKEN(700)이상 HSK(舊7급/新5급)이상 JLPT(舊2급/新N3급)이상		
보훈장학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자녀	입학금+매학기 수업료 전액 감면	▶대학 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또는 교육보호 대상자 증명서 원본 제출 (단, 재학 중 성적 70점 이상)
가족장학	세대 당 2인 이상의 가족이 우리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형제자매, 친자, 부모)	2인: 장학금액 많은 1인에게 7급 지급 3인: 장학금액이 많은 2인 에 한해 7급 지급	▶신입생 및 재학생 중 장학 금액이 많은 1인에게 지급 ▶별도 공지 후 선발 절차를 거쳐 지급 ▶타 입학장학금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이중수혜가능
KTX통학 장학	KTX 정기승차권 이용 통학자	KTX 정기승차권의 30% 지원 장학 (학기당장학금지급)	▶타입학장학금과이중수혜가능 ▶학기말별도공지후정기승차권 확인후지급